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서면질문)

【장애인복지과장 : 곽현규 / 장애인지원팀장 : 박병삼 / 주무관 : 사회8급 조계원】

연락처(☎) : 2600-6363

한상욱의원 구정질문 내용

- (8) 장애인활동지원사 운영 현황(위탁 단체 포함) 및 점검 실태 결과

□ 답변내용 ----- (장애인복지과)

-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사 이용에 대한 이용자의 비용부담 범위 및 지자체 지원 사항
가.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월 단위 기준)

기준중위소득		70%이하	120%이하	180%이하	180%초과
기초수급자	차상위	4%	6%	8%	10%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마형	바형
본인부담금 없음	20,000	1 ~ 15구간별로 38,800원에서 최대 200,200원 부담			

나. 장애인활동지원 이용자의 비용부담

-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시 이용자의 외출 동행에 소요되는 활동지원사의 경비 부분은 이용자가 제공(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p.287)

※ 관내 활동지원기관 (7개소): 식사는 이용자와 활동지원사가 각자 부담하고 추가 소요되는 경비 부분은 이용자가 제공

다. 장애인활동지원 지자체 지원(월 단위 기준)

급여구간	급여별 금액	시간
1구간	7,754,000원	480시간
2구간	7,269,000원	450시간
3구간	6,785,000원	420시간
4구간	6,301,000원	390시간
5구간	5,816,000원	360시간
6구간	5,332,000원	330시간
7구간	4,845,000원	300시간
8구간	4,362,000원	270시간
9구간	3,878,000원	240시간
10구간	3,393,000원	210시간
11구간	2,909,000원	180시간
12구간	2,424,000원	150시간
13구간	1,940,000원	120시간
14구간	1,456,000원	90시간
15구간	971,000원	60시간

※ 국비 : 시비 : 구비 = 50% : 37.5% : 12.5%

○ 장애인활동지원사 운영에 대한 구의 가이드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의거 운영

○ 장애인활동지원사 운영에 대한 기관의 가이드

-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지침 준수
- 관내 활동지원기관 총 10개소 중 7개 기관에서 활동지원서비스 이용 시 활동지원사 경비 제공에 대한 내부 규정 소지 및 교육 실시

○ 장애인활동지원사 운영에 대한 민원

(2023. 1. 1. ~ 2024. 현재)

일시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비고
2024. 4.	활동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기관 교육 내용 불만	해당기관에 주의 촉구 및 유의사항 안내	
2023. 1.	이용자	활동지원사의 서비스 불만	해당기관 활동지원사 교육 요청 및 유의사항 안내	

○ 장애인활동지원사 평균급여 및 근무시간

(2024. 9. 기준)

활동지원사 수	월 평균 급여	월 평균 근무시간	이용자 2인 이상 연계 활동지원사 수	비고
1,781명	1,701,339원	125시간	117명	

-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 복지가 증진되고, 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자 활동지원기관 및 이용자·활동지원사에 대해 연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특히, 2024년부터 3년 주기로 활동지원기관 재지정 심사를 실시하여 활동지원 사업이 책임있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